

#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의안 번호	1356
----------	------

제출년월일 : 2009. 6. .  
제출자 : 제천시장

## 1. 제안사유

-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의 공동발전과 번영을 꾀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Win-Win전략의 일환으로 지방 자치단체 간 행정, 문화, 예술 등 전반적인 교류확대를 통한 공동이익 추구를 위해 우리시와 교류를 희망하는 전라북도 군산시와 자매결연을 체결코자 함.

## 2. 자매결연 필요성

- 광역별 1기초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광역 Net-Work식 교류협력 채널을 구성하여 우리시 최대현안사업인 2010제천국제 한방Bio엑스포성공개최의 기틀을 조성하는 한편 새만금 사업 및 주요 국정시책을 선도하는 군산시의 투자유치의 노하우 및 선진 행정을 공유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필요성이 있음.

## 3. 자매결연 체결 개요

- 결연대상 : 제천시 ↔ 군산시
- 일 시 : 2009. 7월중
- 장 소 : 미정(협의결정)
- 인 원 : 60명정도(제천시 30명, 군산시 30명)
- 내 용 : 국내도시간 자매결연 조인식

- 4. 관계법령** : 제천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등에 관한 조례(별첨)
- 5. 참고자료** : 2009 국내 자매결연 추진계획 1부.

## 참고자료

# 2009년 국내 자매결연 추진 계획

- 광역별 1기초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Net-Work식 교류 협력채널을 개설하여 자치단체 간 공동 발전과 번영을 꾀함.
- 2010제천국제한방Bio엑스포 성공개최 발판 마련 및 한방특화 산업 도시 · 한방관광 휴양도시의 위상 정립에 기여하고자 함.

### ① 기본개요 「제천시 ⇄ 전북 군산시」

#### □ 양도시 기본현황

구 분	충청북도 제천시	전라북도 군산시
단체장	엄태영	문동신
의 장	강현삼	이래범
세대수	53,675세대	99,379세대
인구수	135,309명	263,845명
면적	882.48km	675.38km
행정구역	1읍 7면 9동	1읍 10면 16동
행정조직	2본부 19실과 4사업소(978명)	5국 41실과 5사업소(1,330명)
의회구성	시의원 13명	시의원 24명
예산규모	4,427억 원	6,739억 원
특산물	약초, 사과, 양채등	주꾸미, 꽃세우, 젖갈등

#### □ 추진방침

- 자치단체간 상호 행정정보 교환 등 협력 증진 및 각급기관 민관단체 상호교류 활성화 추진
- 광역별 네트워크 형성으로 2010제천국제한방Bio엑스포 성공개최 발판마련

## ② 자매결연 체결계획

### □ 그간 추진현황

- 광역별 네트워크형성 과정으로 자치단체 우선 교류대상 선정 : 2009. 3. ~  
※ 전라북도와 우리시의 자매결연 자치단체가 없음.
- 자매결연前 사전교류(나운1동 청풍호 벚꽃축제 초청) : 2009. 4. 10  
※ 군산시 나운1동 관계자 제천시청(시장실) 방문
- 자매결연前 사전교류(나운1동↔용두동 자매결연체결) : 2009. 4. 17
- 군산시 관계자 제천 방문 자매결연 체결 의사 합의(대외협력담당) : 2009. 5. 21

### □ 자매결연 체결계획

- 자매결연 조인식 개최
  - 일 시 : 2009. 7월중
  - 장 소 : 미정(협의결정)
  - 참 석 : 60명정도(제천시 30, 군산시 30)
  - 내 용 : 자매결연 조인식 등
- ※ 세부 추진계획 별도 수립 시행

## ③ 향후 자매결연 확대 계획

### □ 자매결연 확대 추진

- 시 · 도별 1자치단체와 자매결연 체결로 네트워크 형성(전국적 지역안배)
- 우리시와 사전교류가 있고 컨셉이 비슷한 자치단체 선정  
※ 한방도시 · 영상문화도시 · 평생학습도시 · 관광도시등 중점검토
- 신규 자매결연으로 경북포항 · 인천연수구등 집중 검토

#### ④ 기대효과

- 자매결연 체결도시를 통한 전국 네트워크 형성 및 우리시 적극 홍보
- 관광객을 통한 인적·물적교류를 체계화하여 실질적인 소득증대 기여
- 광역별 네트워크 형성으로 2010제천국제한방Bio엑스포 성공개최 기반조성

붙임 : 전북 군산 기본현황 · 자매결연 체결현황(9개자치단체) 각1부.

## 전북 군산 기본현황

소재지	전북 군산시 시청로 8번(조촌동88번지)				대표전화	(063)450-4000							
시 장	성명 (한자)	문동신 (文東信)	생년월일 (연령)	1938.05.22 (70)	학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							
	소속정당	민주당	주요경력	농업기반공사 사장, 민주당 21C 국정자문위원									
	시정목표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건설(세계일류를 향한 새만금의 도시군산)										
자매결연 현황	국외도시		미국 워싱턴시, 중국 산동성, 인도 마하트라주, 캐나다 유크시										
	국내도시		경북 김천시, 대구 동구청										
행정구역 현황	행정구역				면적 (km <sup>2</sup> )	가구수 (세대)	인구수(명)						
	일반구	읍	면	동			계	남					
	-	1	10	16	675.38	99,379	263,845	133,832					
조직 및 공무원	조직				공무원수			예산규모(억원)					
	국	사업소	실과	전문	읍면동	계	본청	보건소					
	5	4	41	3	27	1,330		의회					
상징물	꽃		나무		새	로고	특산물(품)						
	동백		은행나무		갈매기		주꾸미, 꽃새우, 젓갈, 조개구이						
주요특징	○ 천혜의 비경 고군산군도와 세계최장 33km 새만금 방조제가 있는 국제 관광도시(새만금 방조제의 71.1% 군산시 면적 : 285.25km <sup>2</sup> )												
	○ 경제자유구역 67km <sup>2</sup> , 산업단지 29km <sup>2</sup> 의 지식산업 기업도시(GM대우, 현대 중공업, 동양제철화약,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 주류 등)												
	○ 항만, 공항, 고속도로, 철도 등 사통팔달의 황해권 물류 중심도시												
관광명소 관광자원	○ 은파유원지, 월명공원, 철새조망대, 오식도공원, 채만식 문학관, 고은생가												
문화행사	○ 4월 벚꽃축제, 9월 국제자동차 박람회, 11월 철새축제												
나운 1동 지역특성	○ 군산시 상권의 중심, 의류상가, 음식점 등 상권의 중심지, 군산 최초의 아파트 재건축												
	○ 시민문화회관이 인접하여 각종 공연, 전시행사가 상시 개최됨												

## 자매결연 체결현황(9자치단체)

자치단체명	단체장	2008 ~ 2009년 현재 교류실적	체결일
서초구	박성중(초선) (2006~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 직거래 12회 62,800천원</li> <li>· 구민의 날 참석 등 2회</li> <li>· 민관단체 영농체험행사 방문 1회 50명</li> </ul>	'99.11.01
동대문구	홍사립(2선) (2002~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 직거래 2회 19,800천원</li> <li>· 영화제 · 한방건강축제 참석 및 직원농촌봉사활동 등 4회</li> </ul>	'00.09.22
성북구	서찬교(2선) (2002~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 직거래 2회 21,000천원</li> </ul>	'04.05.12
함평군	이석형(3선) (1998~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함평 · 나비곤충엑스포 참석 등 15회</li> <li>· 영화제 · 자동차매니아페스티벌 참석 등 3회</li> <li>· 함평마라톤대회 엑스포 홍보 34명</li> </ul>	'06.09.15
용산구	박장규(3선) (2000~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 직거래 4회 96,500천원</li> <li>· 용산구 등반화합대회 등 5회</li> <li>· 용산구 민관단체등 제천명소탐방 2회 140명</li> </ul>	'07.09.07
마산시	황철곤(3선) (2001~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산시 · 제천시 합동 등반대회</li> </ul>	'07.10.26
광명시	이효선(초선) (2006~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 직거래 1회 3,000천원</li> <li>· 자매결연 체결 · 영화제 참석 등 3회</li> </ul>	'08.04.18
대구중구	윤순영(초선) (2007~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 직거래 1회 8,000천원</li> <li>· 자매결연 체결 · 영화제 참석 등 3회</li> <li>· 전시판매장 및 홍보부스 운영 1회 5,450천원</li> </ul>	'08.05.21
태안군	진태구(2선) (2002~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매결연 체결</li> <li>· 태안군 기름유출사고 지원봉사활동(민관 45개단체 · 2,101명)</li> <li>· 국제꽃박람회인적교류 및 엑스포 홍보(26개단체 · 140명)</li> </ul>	'08.12.15

## [관계법령]

### [제천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연동에 관한 조례]

제정 2008. 1. 4 조례 제83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 국내 및 국제교류 활동의 확대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우호도시 및 행정협력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결연의 종류) 제천시와 국내·외 도시간 체결하는 결연은 자매도시와 자매결연의 전단계인 우호도시 및 행정협력 관계를 맺은 행정협력 도시로 한다.

제4조(결연의 원칙) ①자매·우호도시 결연 및 행정협력 협정 대상 국내·외 도시는 제천시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우호도시는 그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되, 제천시의 재정여건과 교류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범위안에서 정한다.

③행정협력 도시는 제천시와 친선을 도모하고 공동 관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상호간 협약을 맺을 수 있다.

제5조(사전검토) ①시장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면적 및 행정·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적합성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②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6조(사전교류)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매결연 등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시민·의회·사회단체 대표·공무원 등을 상호 교환 초청하여 대상지역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는 등 사전교류를 할 수 있다.

제7조(동의) ①시장이 국내·외 도시와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협정을 체결한 후에는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결연절차 등) ①자매결연 등은 시장과 국내·외 도시를 대표하는 사람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갖고 각각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통 관심사항과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서명하고 문서를 교환한 후 각각 보관한다.

제9조(교류내용 및 사후관리) ①시장은 결연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체육교류
2.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의 세계화 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교류
3.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시장 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교류
4. 상호 이해 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행정교류
5. 그 밖에 상대도시와 상호 공통관심 사항 등

②시장은 교류가 부진하거나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시장은 결연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 하여야 한다.

**제10조(결연의 취소)** 시장은 결연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교류두절로 결연관계가 유명무실하게 되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서로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및 경비보조)** ①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연한 국내·외 도시와 시민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류업무를 민간인(단체를 포함한다)(이하 “민간인”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교류에 참가하거나 업무의 위탁을 받은 민간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행정협력 협정에 의하여 협력하되 자매결연 또는 우호도시 협정 주민이 제천시의 공공시설 이용시, 제천시의 주민과 동일한 지위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1조②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협정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1조②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협정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